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20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고민정 · 조계원 · 조정식
정을호 · 김문수 · 맹성규
이성윤 · 조인철 · 김 윤
전종덕 · 김영호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이 산모들은 평균 12.6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음. 대다수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은 것임.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 상당수가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실정임.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가 174만원(일반실)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산모의 선호도가 높고 입소 경쟁률도 치열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여건 등으로 인해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 21곳밖에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 비용의 2/3, 운영

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해 출산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7제1항 중 “산후조리원의”를 “의료기관 현황, 산후조리원의”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11.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②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경비 보조의 우선 지원 지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u>산후조리원의</u>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u>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u>)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 ----- ----- <u>의료기관 현황, 산후조리원의</u> ----- ----- ----- <u>이하</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u>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u>
<u><신 설></u>	11.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u>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u>
<u><신 설></u>	②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u>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u>

② (생략)	<u>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경비 보조의 우선 지원 지역을 정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